

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3) 선물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선물업 진출을 방지하고, 선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물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절차 등(영 제10조의3제4항 내지 제8항 신설)

- (1)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2)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302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을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
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1
의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
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

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
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
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
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
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지배주주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외국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이하 이 표에서”를 “이하”로 하고, 동호의 요건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신용공여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1호의 요건란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중 “금융

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률”로 하며, 동표제2호의 요건란 다목중 “대기업집단”을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3호중 “회사(그 지주회사가)를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로 한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지배주주의 요건(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구 분	요 건
	<p>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구 분	요 건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벌인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이 개정(법률 제7618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영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별표 1의2 신설)

- (1) 법률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배주주의 범위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2)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로 정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자산운용회사의 설립허가시의 주요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등으로 정함.

- (3) 자산운용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허가시의 규제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자산운용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절차 등(영 제1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신설)

- (1)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2)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